

소 장

원 고 별지목록 기재 원고목록과 같음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고재환, 유태영
서울 중구 서소문11길 50 신아빌딩 304호(법률사무소 새날)
전화 02-3273-8100, 팩스 02-3273-9763

피 고 현대위아 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53(가음정동)
대표이사 정재욱

입금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53(가음정동)에 본점을 두고 각종 공작기계 및 금속가공기계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 후 퇴직한 근로자들입니다(다만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재직 중 사망한 망 의 상속인들입니다).

2.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면서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유급휴일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연차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사용연차수당” 라고 함), 근로자의 날(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법률상 통상 임금으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 일체의 임금(이하 “법정수당” 이라고 함)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등의 산정을 잘못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위 법정수당 및 연장·야간·휴일의 각 시간외근로수당(이상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미사용 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및 제61조 제1항) 등 일체의 법정수당과 그 외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임금 등의 금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위 일체의 법정수당 등의 미지급 금품은 평균임금의 일부로서 평균임금 산정에서 누락

된 것인바, 피고 회사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등의 임금 등 금품의 일부 역시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피고 회사에서 원고들과 같은 생산직 사원들은 일급제로서, 법원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하여 “법정수당인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각 수당은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에 8시간과 해당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고 판정한 사실이 있습니다(판결문 제41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2020.8.13.선고 (창원)2016나20995 임금 판결).

(갑제1호증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2020.8.13.선고 (창원)2016나20995 임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같은 생산직 사원들에게 매월의 주차수당(피고는 주휴수당을 주차수당으로 칭함)을 통상임금(통상일급)이 아니라 “기본일급 × 해당월의 주휴일수 = 주차수당액” 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갑제2호증의 1 내지 6 급여명세서)

이상의 이유로 원고들은 미지급된 주휴수당 등의 이 사건 법정수당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4.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아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 부분과 그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 하기로 하였는바(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 회사가 복리제도 개선금·임금조정·본인2·휴가비·귀향비 등 성질상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하여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피고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초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초과근로에 관한 각 법정수당 및 그 외 통상임금으로 산정·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사용연차수당 등의 법정수당 등 임금 일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들은 미지급된 임금 일체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갑제3호증 단체협약·취업규칙)

5. 이상과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법정수당 일체와 그 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임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과 이 금품이 평균임금으로서 산정·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등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 다만 원고들이 급여명세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구체적인 체불임금 액수를 산정하는 데는 시일이 걸리는바, 시효소멸을 우려하여(근로기준법 제49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금10,000,000원을 우선 청구한 후에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급여명세서 등을 입수하여 원고별 구체적 미지급된 금품이 산정되는 대로 원고별 청구금액을 확정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하고자 합니다(관할 기입, 서울 남부).

입 증 방 법

- | | |
|-------------------|---|
| 1. 갑 제1호증 |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2020.8.13.선고 (창원)2016
나20995 임금 |
|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 급여명세서 |
| 1. 갑 제3호증 | 단체협약·취업규칙 |
| 1. 갑 제4호증의 1 | 기본증명서 |
| 1. 갑 제4호증의 2 | 가족관계증명서 |
| 1. 갑 제4호증의 3 | 주민등록초본 |

첨 부 서 류

- | | |
|-------------|----|
| 1.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1. 위 입증방법 각 | 1부 |
| 1. 송달료납부서 | 1부 |
| 1. 소송위임장 | 1부 |
| 1. 소장부분 | 1부 |

2025. 5.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기 덕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